

	자체평가 운영 규정	문서번호		3-1-16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1/5	관리 부서	성과관리 센터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의거하여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전략의 계획 및 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평가의 원칙) 대학 자체평가(이하 “자체평가”라 한다)는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자체평가 대상) 자체평가 대상은 우리대학의 학과, 직제상의 행정단위 및 부속·부설기관 등 모든 조직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자체평가 영역) 자체평가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교육·연구
2. 대학의 경영운영
3. 대학의 특성화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

제5조(자체평가 시기) 자체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정기평가는 매1년에 1회, 수시평가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한다. 평가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평 가 조 직

제6조(자체평가 전담부서) ① 자체평가에 관한 총괄 업무는 성과관리센터에서 담당한다.

② 자체평가 업무 총괄책임자는 성과관리센터장으로 하며, 성과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운영계획 수립
2. 자체평가 업무 총괄
3.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에 반영
4.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운영 규정	문서번호	3-1-16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2/5	관리 부서 성과관리 센터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① 평가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추진위원회(이하“평가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자체평가실무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평가추진위원회는 성과관리센터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산학협력처(단)장, 사무처장(이하“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및 총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3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1. 위원장은 성과관리센터장으로 한다.
2.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3.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간사는 성과관리센터 소속직원으로 하며, 회의록 작성과 관리 및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 ③ 평가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가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⑤ 평가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대학자체평가 운영계획 검토·조정
2. 대학자체평가 항목 및 지표 조정
3. 자체평가 기준 및 방법 심의
4. 자체평가 결과의 심의·확정
5.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자문 및 심의 사항

⑥ 평가추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이외의 평가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평가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8조(자체평가실무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이하 “평가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각 평가영역별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성과관리센터장, 총무팀장, 교무팀장, 학생팀장, 산학팀장, 기획팀장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1. 위원장은 성과관리센터장으로 한다.
2.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3.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체평가 운영 규정	문서번호		3-1-16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3/5	관리 부서	성과관리 센터

③ 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지표별 반영비율 개발
2. 자체평가 자료수집 및 평가
3.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④ 평가실무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영역별 평가업무에 교직원을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평가방법 및 절차

제10조(평가계획 수립) 성과관리센터는 평가 해당년도에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은 후 평가계획을 행정부서에 통지한다.

제11조(평가기준) 자체평가의 평가영역, 평가지표 등은 평가위원회가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제12조(평가방법) 평가방법은 평가단위별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제13조(평가자료 제출)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행정부서는 성과관리센터에 평가자료를 제출한다.

제14조(평가실시) ① 성과관리센터에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② 평가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평가실무위원회는 해당부서에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 보고) 성과관리센터 및 실무위원에 의해 작성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 4 장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제16조(평가결과의 공시) 전담부서는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7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자체평가결과는 대학 장단기발전계획 및 전략수립, 대학 특성화정책 개발, 학과 및 행정부서 구조조정, 업무프로세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자체평가 운영 규정	문서번호		3-1-16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4/5	관리 부서	성과관리 센터

② 자체평가결과 우수 행정부서 및 교직원에 대하여 평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행·재정지원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평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자체평가 운영 규정	문서번호	3-1-16		
		제정일	2010. 03. 01.		
		개정일	2022. 02. 18.		
		페이지	5/5	관리 부서	성과관리 센터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